

당첨자 안내문 | 신혼부부

■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사전 서류제출 안내

구분	내용		비고
일정	정당 당첨자	2023년 3월 2일(목) ~ 3월 7일(화) 6일간, 10:00 ~ 17:00	사전예약제 운영
	예비 당첨자	2023년 3월 8일(수) ~ 3월 11일(토) 4일간, 10:00 ~ 17:00	사전예약제 미운영
장소	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견본주택 (부산 강서구 명지동 3597-1번지)		

※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■ 사전 서류제출 안내(구비서류)

구분	필수	해당자	해당 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 ※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2.10. 이후 발행분에 한함)
신혼부부	○		인감증명서	본인	-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※ 대리인 접수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※ 대리인 위임 불가
	○	○	주민등록표 등본	본인	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		배우자, 세대구성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○	주민등록표 초본	본인	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		배우자, 세대구성원	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혼인신고일 확인("상세"발급)
	○		출입국사실 증명서	본인	- 청약 자격요건 및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 -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(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) - 2020.12.21.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일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
	○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)
	○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.)
	○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○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(임신중인 경우)
	○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○	○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-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○		전자수입인지(사본)	-	※ 인지세 납부 안내문(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홈페이지 참조)
	대리인 제출 시	○		위임장	본인
○			계약자 인감증명서	본인	-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※대리인 접수 불가
○	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(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) - 2020.12.21.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
부적격 통보 받은 자	○		주택 소명자료	해당 주택	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
	○		사업주체 요구자료	해당 주택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소득증빙서류, 자산입증서류,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(‘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’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- 해당직장 -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-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-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	-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	-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- 신규 취업자 :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- 계속 근로자 : 종합소득세 신고자 - 소득금액증명원, 위촉증명서 /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-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위촉증명서	- 해당직장 - 세무서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(사본)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	-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-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본)	- 국민연금 관리공단 - 세무서
	신규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(사본) -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- 국민연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	- 국민연금 관리공단 - 세무서
	법인사업자	-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	- 세무서 - 등기소
	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-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-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	- 세무서 -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-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-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-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: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- 해당직장 - 국민연금 관리공단	
무직자	- 비사업자 확인각서(건본주택에 비치) 1)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※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 2)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※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~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	- 세무서 - 해당직장	

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

해당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'부동산 소유 현황'이 있는 경우	필수 ③ 부동산 소유 현황 (세대원별 각각 발급) ④ 등기부등본 (*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)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③,④ 등기소 (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) ⑤ 행정복지센터
	추가 (해당자) ⑥ 공동(개별)주택공시가격 확인원 ⑦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(*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·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) ⑧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(*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)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	⑥ 행정복지센터 ⑦ 행정복지센터 ⑧ 위택스 (www.wetax.go.kr)
'부동산 소유 현황'이 없는 경우	필수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'부동산 소유 현황'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	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

서류구분	해당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입증서류	근로자	- 재직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- 해당직장 - 세무서 - 국민건강보험 (공단)
	자영업자	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-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내역 포함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납부 입증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/자영업자/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)	※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-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납부자) - 납세사실증명(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)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소득금액증명원	- 세무서 - 해당직장

※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